

문 의	정보고객지원국 정보시스템과	과 장 마정운 사무관 윤석영	042-481-5099 042-481-5117
	2018년 6월 25일(월) 배포 즉시 보도 바랍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정보이용에 장벽없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특허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대표 홈페이지의 모든 내용을 외부 검색 엔진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전자출원을 할 수 있는 ‘특허로’와 지식재산권 출원, 심사, 심판, 활용 등 IP R&D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 홈페이지에서 607개 코너 분량의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식재산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돼 홈페이지 방문 인원도 일일 2만 3천여 명에 달한다.

또한, 특허청은 제약없이 공공정보에 접근하도록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상반기 중 홈페이지에 적용된 ActiveX 등 플러그인을 제거하고 신규 적용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W3C*에서 정한 웹표준을 따른 홈페이지 관리 운영으로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있다.

* W3C : 회원기구, 정직원,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웹을 위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장려하는 국제 컨소시엄으로 지난 10년 간 80여 개의 W3C 권고안을 발표

이번 홈페이지 개방성 강화는 민간의 빅데이터 산업에서 지식재산 관련 공공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허청은 그동안 보안 및 안정성 측면에서 네이버, 구글과 같은 포털 사이트의 검색엔진이 특허청 홈페이지에 정보수집을 위해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으나, 개인정보를 포함한 콘텐츠를 정비하고 대량의 데이터 요구를 감시하는 보안체계를 강화해 검색엔진이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약을 없애기로 했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지식재산에 관심있는 모든 이용자가 신체적, 환경적 제약없이 특허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공공정보를 전면 개방해 정부 및 민간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열린 데이터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붙임> 1. 웹 접근성 품질 평가 항목(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2. 웹 호환성 품질 평가 항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정보고객정책국 정보시스템과 윤석영 사무관(☎ 042-481-51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웹 접근성 품질 평가 항목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평가 항목

원칙	지침	검사 항목
1. 인식의 용이성	1.1 대체 텍스트	1.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1.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1.2.1.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1.3 명료성	1.3.1.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1.3.2. (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1.3.3.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한다.
		1.3.4. (자동 재생 금지)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
1.3.5. (콘텐츠 간의 구분)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2. 운용의 용이성	2.1 입력장치 접근성	2.1.1. (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1.2. (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2.1.3. (조작 가능)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2.2 충분한 시간 제공	2.2.1. (응답시간 조절)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2.2.2. (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3 광과민성 발작예방	2.3.1.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2.4 쉬운 내비게이션	2.4.1. (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2.4.2. (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2.4.3. (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3. 이해의 용이성	3.1 가독성	3.1.1. (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3.2 예측 가능성	3.2.1.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에 의한 맥락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3.3 콘텐츠의 논리성	3.3.1. (콘텐츠의 선형 구조)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3.3.2. (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3.4 입력 도움	3.4.1. (레이블 제공) 사용자 입력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3.4.2. (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4. 견고성	4.1 문법 준수	4.1.1.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4.2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4.1.2.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붙임 2

웹 호환성 품질 평가 항목

□ 전자정부서비스 웹 호환성 진단표

구 분	진 단 지 표	진 단 기 준	진 단 방 법
1.웹표준 문법 준수	1-1 표준 (X)HTML 문법 준수 여부	- W3C Markup Validator에서 출력된 오류의 개수에 따라 감점 ※ HTML5의 경우 Nu Html Checker로 자동전환	W3C Markup Validator
	1-2 표준 CSS 문법 준수 여부	- W3C CSS Validator에서 출력된 오류의 개수에 따라 감점 ※ CSS의 경우 Level 3으로 진단	W3C CSS Validator
2.웹호환성 확보	2-1 동작 호환성 확보 여부	- 브라우저 부가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 페이지 내에 사용된 Javascript 오류 및 DOM 경고 발생시 감점 - Javascript가 의도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점검하여 비정상적 동작에 대해 감점	브라우저 부가 기능, 크로스 브라우징 테스트 준용
	2-2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여부	- 다양한 웹브라우저의 최신 버전에서 동등한 레이아웃으로 구현되었는지 여부 확인 - 웹브라우저별 특성에 의한 차이(폰트, 픽셀 등)는 예외로 함	크로스 브라우징 테스트 준용
3. 비표준 기 술제거	3.1 비표준 기술제거 여부	- 웹사이트에서 비표준 기술(액티브X 등)사용 여부 점검 - 로그인, 보안, 구간암호화, 공인인증 - 영상, 멀티미디어(플래시, 실버라이트, 그래프, 리포트 등) - 파일 송수신	수동평가
	3-2. 최신 웹 표준 기술 사용 여부	- 최신 웹표준 기술(HTML5) 사용 여부 점검 - 호환성 확보를 위한 대체수단의 경우 웹표준 기술 사용여부 점검	수동평가